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121)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12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6124)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개요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II . 검토의견	7
1.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2. 인구인지 결산제도 도입(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3.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I. 개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
3. 회부연월일 : 2024. 1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인

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고, 인구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제6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등).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
3. 회부연월일 : 2024. 1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
3. 회부연월일 : 2024. 1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예산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생략)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u>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u>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 -----.
<u><신설></u>	<u>1.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u>
<u><신설></u>	<u>2.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미치는 효과</u>
<u><신설></u>	<u>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u>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생 략)

<신 설>

7의2.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방재정의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성과 분석 등을 위한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인구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신 설>

인구정책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정책담당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및 관리

2.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성과 및 지표 관리

3.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기관, 제3항에 따른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 등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3(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8. ~ 14. (생략)

②·③ (생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인구인지 예산서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인구인지 예산서

8.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6조의3에 따른 인구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구인지 결산서

9의3.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10. ~ 16. (생략) ② ~ ⑧ (생략)	<u>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 (이하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u>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산의 원칙에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별도의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구인지 예산서 등의 작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인지예산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제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보임.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제도”¹⁾가 도입되어 2008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는 2011년 도입되어 2013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성평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²⁾.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³⁾.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1)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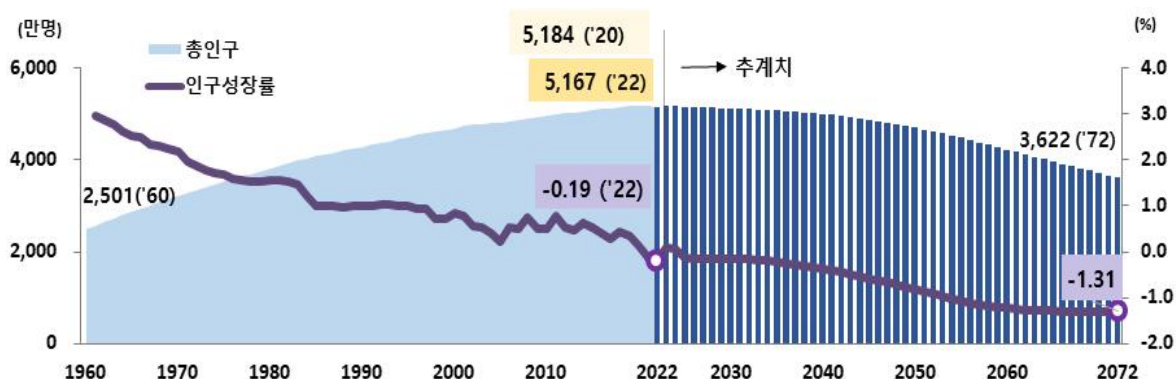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⁴⁾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72년에는 3,622만명(1977년 수준)으로 감소하며, 출생아 수는 2022년 현재 25만명에서 2072년 16만명(2022년의 6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1985~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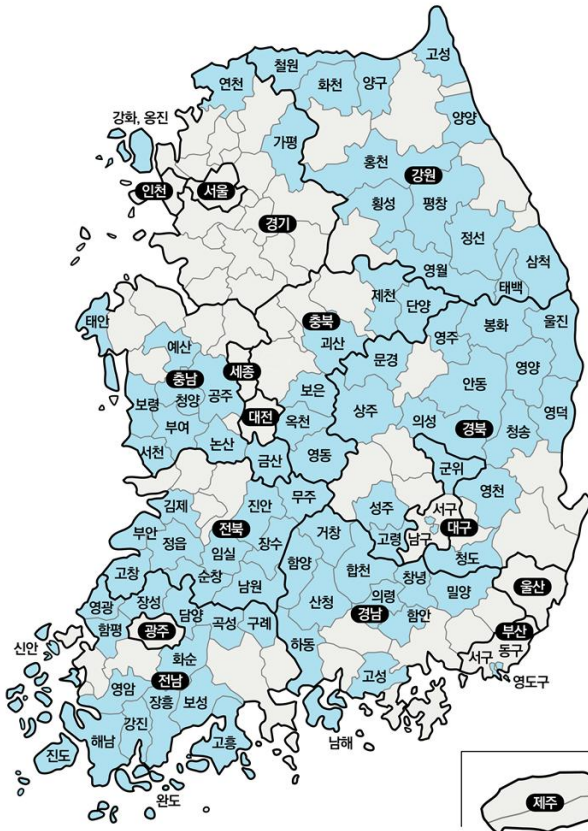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4)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KOSIS 국가통계포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인구감소지역⁵⁾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9곳이며, 2024년 대비 2050년 비수도권지역 인구는 약 1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4.7%)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총 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자료 : 행정안전부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4년 대비 2050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변화 예상치>

(단위 : 명, %)

구분	2024년	2030년	2040년	2050년	감소율
수도권	26,304,110	26,477,379	26,337,283	25,103,290	-4.7
(비율)	(50.8)	(51.6)	(52.6)	(53.3)	
비수도권	25,446,955	24,828,334	23,721,935	22,003,670	-13.5
(비율)	(49.2)	(48.4)	(47.4)	(46.7)	
총합	51,751,065	51,305,713	50,059,218	47,106,960	-9.0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재구성

이처럼 우리나라는 향후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방소멸 문제가 동반됨에 따라 경제·교육·안보 등의 각 분야에서 산업별 인력수급 부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인프라 붕괴, 상비병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우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입규모 감소와 지출수요의 증대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⁶⁾, 국가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⁷⁾

이 계획과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서를 연계할 경우 인구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인구변화에 관한 지방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⁹⁾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정부의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지켜본 후 해당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극복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치단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국가재정에 이를 우선 도입 후 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8)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22호, 2024.12.02. 발의

9)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20호, 2024.12.02. 발의

2. 인구인지 결산서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2.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u> 5.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인구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인구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③ <u>인구인지 결산서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 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 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구인지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인구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4(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신 설>

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인구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 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337